

#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

##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81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. .  
제 안 자 : 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(위탁운영)에 의거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사무명 :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위탁운영

#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
 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, 제5조
- 필요성
  -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농·임산물 산업 발전에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## **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**

- 위탁사무 :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
- 위탁내용 및 범위
  -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위탁대상 시설물 등 위탁재산의 유지·관리
  -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#### **라. 위탁시설 개요**

- 시설명 :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
- 소재지 :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618-19
- 시설규모 : 건축면적 497.42m<sup>2</sup>(1층 266.56m<sup>2</sup>, 2층 230.86m<sup>2</sup>)
- 주요시설
  - 1층 : 추출실, 세척실, 건조실, 포장실, 보일러실 등
  - 2층 : 사무실, 물품보관실, 판매점 등

#### **마. 민간위탁기간**

- 위탁기간 : 2025. 12. ~ 2028. 11.(3년)

#### **바. 수탁자 선정방식**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,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심사 결정
- 신청자격
  - 시설목적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평창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
  -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자(재위탁금지)
  - 기타 제시한 위탁조건을 수락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
- 선정기준 : 위탁운영 심사평가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
  - 심사내용 : 시설운영계획(20), 시설 유지 · 안전관리계획(20), 시설 활성화 계획(20), 전문성 및 책임성(20), 재정건정성(10), 운영실적(10)
- 수탁기관 선정결과 평창군의회 제출

## 사. 사용료 산출근거

- 시설사용료 : 해당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

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향후 임산물 산업 발전에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의 위탁운영이 적정함.
- 향후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

-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는 "85"점으로 평가됨.

평가지표	지표배점	평가점수
계	100	85
사업인프라	22	19
사업활동	17	12
사업성과	38	34
지도점검 이행노력	8	7
만족도 제고노력	15	13

## 차. 추진계획

- 민간(재)위탁 군의회 동의안 심의 : 2025. 10.
- 민간(재)위탁 공고 : 2025. 10.
-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: 2025. 10. ~ 11.
- 협약 체결 : 2025. 11. ~ 12.
- 민간위탁 운영 : 2025. 12.~ 2028. 11.(3년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평창군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에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#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생략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② 생략

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(이하 “위탁기간”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